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99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현정 · 복기왕 · 최민희
이용우 · 진성준 · 허영
이주희 · 김남근 · 황명선
조정식 · 김용만 · 남인순
이강일 · 유동수 · 이인영
박지혜 · 박수현 · 염태영
차지호 · 안도걸 · 김문수
장경태 · 박홍배 · 조인철
박주민 · 박정 · 김윤
강준현 · 문진석 · 최혁진
박상혁 · 이정문 · 박범계
권향엽 · 백승아 · 박용갑
이수진 · 이재강 · 안태준
박홍근 · 한창민 · 문금주
김기표 · 박찬대 · 김승원
김태년 · 박지원 의원
(47인)

제안이유

부동산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불법행위 및 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불법행위는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다양한 법률 위반 사항이 혼재하는 데 반해 부동산감독 관계기관의 권한과 가용한 정보는 기관별로 상이하고 제한적임에 따라 그 단속·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현행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 나. 감독원은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부동산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

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 또는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안 제5조제1항).

라. 감독원의 조사방법으로 출석·진술·보고·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현장조사와 서류영치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마. 감독원은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이첩, 처리결과 회신,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사.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중복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둠(안 제8조).

아.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

자. 감독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및 협의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 직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부동산불법행위 조사 대상자들의 협조 의무를 간접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를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부동산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감독원의 설치) 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독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감독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감독원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업무) 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동산불법행위”라 한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5조에 따른 조사

2. 부동산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또는 제재 등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업무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
3. 제7조에 따른 감독원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무처리
5. 부동산불법행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홍보 및 단속
6. 부동산감독관계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7.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원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업무

제5조(부동산불법행위 조사) ①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 혐의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4. 그 밖에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요구
3. 조사대상자에 대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시설·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5. 제3호에 따라 제출받거나 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영치(領置)

③ 감독원은 별표 1 제20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수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의 요구 등)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별표 2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공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그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부동산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특정 점포는 그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장이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④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조사대상자의 대출 현황과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등, 금융거래정보등 및 신용정보(이하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려는 정보등의 내용과 요구목적에 대하여 미리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등을 보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나 증거자료로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 ①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서 부동산불법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나 부동산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이거나 조사 과정 중에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동산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부동산감독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첩 및 제3항에 따른 고발이나 통보 등을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이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유자료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부동산감독협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유자료등을 보유한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보유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자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⑥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의 조사·수사 또는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수사 또는 단속(이하 “합동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이첩, 고발, 회신, 정보제공 요구, 합동조사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동산감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조사·수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조사·수사의 중복 방지를 위한 조사·수사 대상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정보등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점검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부동산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동산감독원장

2.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
 4. 부동산·금융·조세·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원장은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통보

③ 누구든지 부동산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감독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및 협의회 위원장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권 남용 금지) 제5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독원의 직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감독원의 직원 또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석 및 진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1]

부동산불법행위(제4조제1호 관련)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제1호·제3호·제7호는 제외한다.), 제50조(다만, 제1호, 제3호 중 제25조제5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2조제3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3.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 제110조제1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4.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60조(다만, 제2항제2호,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제4항은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5.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제51조(다만, 제2항제5의2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6. 「농지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1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4조(다만,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다만, 제10호·제11호는 제외한다.), 제138조, 제140조(다만, 제1항제1호, 제2항제3호·제3의3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8.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제1호·제2호, 제85조제2항(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다만,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67조(다만, 제2항제8호, 제3항제6호·제7호, 제6항은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
1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

1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 제40조(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3항제1호, 제4항은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1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제5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다만, 제7호는 제외한다.), 제62조, 제64조제2항제1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3조제1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
17.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다만, 제1의2호는 제외한다.), 제102조(다만, 제1호, 제6의2호·제8호부터 제11호까지·제14호·제16호는 제외한다.), 제103조, 제104조(다만, 제1호·제4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06조(다만, 제2항제5호, 제3항제2의3호부터 제4의5호까지·제7호, 제4항제2호, 제5항은 제외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1조의2, 제32조제1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
19. 부동산등의 취득·보유·사용·양도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 부동산등의 취득·보유·사용·양도 등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법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포탈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1. 부동산등의 취득·보유·사용·양도 등과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32의2조까지,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14조, 제323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 제352조 및 제355조부터 제359조까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2. 그 밖의 부동산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별표 2]

부동산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요구 대상 자료 또는 정보(제6조제1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5.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연금보험 납부확인서 및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 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7. 「국세징수법」 제108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8.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 상실신고에 관한 자료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0. 「법인세법」에 따른 조사대상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자료. 다만, 납부내역은 제외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서 등 부동산 관련 자료
1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14.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6.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정보
18.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9. 그 밖에 부동산감독원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